

核非擴散制度의 將來와 IAEA의 役割

本稿는 지난 7월6일 개최된 美國原子力學會 韓國支部 제40차 월례기술토론회에서 특별강연한 내용이다. Scheinman 교수는 '86년부터 2년간 IAEA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을 역임하였고, 美국무성 핵비확산문제담당보좌관을 지낸바 있는 사계의 專門家이다.



Lawrence Scheinman
<美國 코넬大學校 教授·
同大學 平和問題研究所長>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의 국민적 관심은 소련과 동구권을 휩쓰는 파업사태와 미·소 및 동서관계의 극적인 관계개선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인 사실이지만 지난 수십년간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핵무기확산방지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왔고, 강대국간의 정치적인 관계가 매우 긴장된 시기에도 이 목적을 위한 협력은 순조로웠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핵확산금지를 전전시키고 지지하는 문제는 현 비확산제도의 취약성과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일 반적으로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은 소수의 국가들도 대부분이 핵무기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단지 한 두가지 이유 때문에 다국 간 조약의 수락을 거부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계속 관심사항으로 남아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의 숫자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가 발효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국제원자력 기구(IAEA)는 세계 핵무기 비보유국가의 핵물질 중 95% 이상을 보장조치하에 두고 있다.

1985년 NPT평가회의는 NPT조약과 핵비확

산제도가 핵무기 보유국가들에게 더욱 확고하고 영속적인 방법으로 핵무기관리와 군비축소를 하도록 권고하는 일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지역 및 국제적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NPT평가회의는 현재의 영예로운 역할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특히, 힘과 관심이 이전의 보다 간접적인 관심에서 이탈하여 정치적인 변화에 도전적인 힘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기에 그 역할을 중지할 수 없는 이유는 정치적인 변화에 대한 도전적인 힘이란 것은 핵비확산문제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동구권에서의 움직임은 국제간의 화해무드를 깊게 하고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재거시키고는 있지만 역시 그 부정적 영향도 가시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시기에 핵비확산의 중요성에 대한 진단을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다.

불원간 개최될 1990 NPT평가회의나 1995년도에 개최될 NPT조약 확장에 관한 중요회의는 핵비확산에 있어서 미·소 양국의 공통관심사를

어떻게 통합하고 한차원 높게 승화시키느냐를 고려할 특별히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며, 핵비확산제도의 기반을 넓고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국제감시보장조치를 말하지 않고는 핵비확산문제를 논의할 수 없고, 국제감시보장조치는 NPT보장조치의 이행에 책임을 져온 IAEA를 빼놓고는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첫번째 임무는 소련과 미국이 기타의 핵심 국가와 더불어 공통적으로 혹은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앞에서 지적한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해 내는 일이다. 이것이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제가 된다면 첫출발의 중심과제는 핵비확산과 IAEA를 연결하는 일이다. IAEA의 보장조치는 효과적인 핵비확산제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IAEA의 保障措置

IAEA의 보장조치는 두가지 측면에서 IAEA의 리더쉽에 대하여 도전을 받고 있고 또 비판적인 진단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는 보장조치의 효과를 개선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보장조치가 취급해야 하는 과제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충하는 일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보장조치제도의 신뢰와 확신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감시의 수준과 강도(強度)를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면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검사의 노력과 수단이 요구된다.

둘째로 요구되는 것은 IAEA가 타조약—특히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소간에 협상을 한 INF조약의 감사방법과 경험에서 유익한 내용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일이다.

INF조약은 IAEA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경험을 쌓게 했다. 문제는 INF의 체제와 운영경험을 IAEA가 자신의 보장조치체제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비핵국가들로부터 전세계적으로 보장조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핵무기통제와 군축협정의 체결이 장차 가능성은 있지만 방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비핵국가들의 요구를 핵비확산문제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검토에는 IAEA의 책임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충격뿐만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가가 어떻게 하면 핵비확산에 관한 전반적인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순응해 올 수 있느냐 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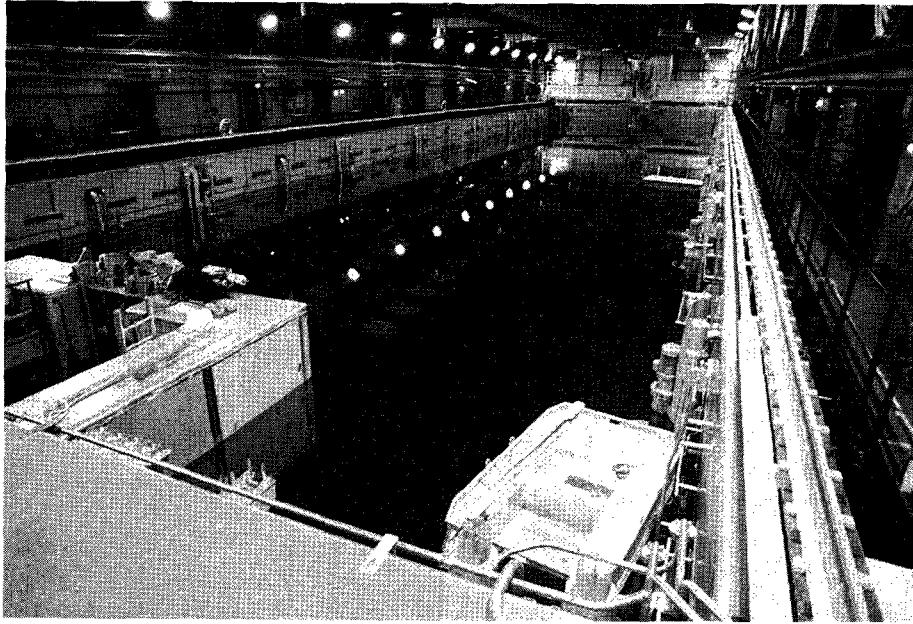
핵비확산제도에의 참여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핵비확산의 제 중에 기본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다 더 큰 영향력을 핵무기 창시국가들에게 미치게 할 수 있게 하여 이들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핵비확산과 전반적인 보장조치에의 적용에 최대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느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프랑스와 중국을 1995년 이전에 NPT조약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것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이 1990년 NPT조약평가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할 것을 결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AEA와 武器減縮

IAEA가 직접적으로 주요 무기감축과 군축협정의 감시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IAEA의 권한하에서 핵비확산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IAEA의 감시경험은 무기감축협정에 관한 개발, 조직 및 이행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IAEA 조직 자체가 이 감축협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것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를 계속적인 무기감축과 군축협정에 대하여 IAEA 감시제도의 이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이점을 IAEA 보장조치를 강화하거나 비핵확산제도의 강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잠정적으로 가능한 영역으로는 핵분열성물질의 생산시설의 폐쇄, 무기생산목적의 핵분열성물질의 생산중지의 감시 등을 들 수 있다. 군비나 핵탄두의 해체시에 철거된 핵분열성물질의 저장물은 평화적 목적의 핵주기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로지 장차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화학무기분야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IAEA 보장조치의 두가지 기술요소, 즉 견제와 감시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외에도 IAEA의 감시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및 관리적 교훈에 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保障措置와 技術協力의 均衡問題

IAEA의 제3세계 회원들 대부분은 보장조치 활동에는 별 흥미가 없고 오로지 IAEA의 기본적인 기능은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이 두가지 기능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느냐, 특히 원자력이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해서 기술적 내지 경제적으로도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IAEA의 회원으로서 제3세계 국가들은 보장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치적인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거나 반대로 파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의 이 기구에 대한 태도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그들의 정당한 관심사항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IAEA를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지켜나가려는 제3세계 국가들의 오랜동안의 주장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앞장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다.

主要懸案問題

NPT는 핵무기의 획득이나 핵폭발성물질의 발명을 사전에 봉쇄하고, 그대신 파괴적인 목적으로 전용될 수도 있는 핵물질을 비파괴적인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해군추진함을 들 수 있다.

카나다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막마지 단계에서 이 계획

에서 사용하는 핵물질의 불법적 전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감시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카나다는 결국 이 계획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였지만, 원자력잠수함에 대하여 비핵무장국가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핵추진함에 대한 지원의 그 첫번째 승인여부 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핵추진함의 계획이 승인된다면 감시기능 여부 및 그 방법은 IAEA가 수립해야 할 과제이다.

두번째의 관심영역은 IAEA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NPT로 부터의 탈퇴문호를 개방하는 문제, 그리고 강대국의 관심이 감소되어 지역적 분쟁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보장조치된 핵물질의 전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확산의 위기문제와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핵확산위기를 초래할 긴급사태에 있어서는 가능하고 계획된 범위까지는 핵비확산제도가 보호되는 대응정책들이 상호 보강될 수 있도록 위기 관리조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대국이나 그외 국제기구의 핵심국가들이 단합된 행동을 취하게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평행적 협조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조치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적인 변동상황으로서 우리 모두가 긴급사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勸告事項

핵비확산문제와 IAEA의 역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권고를 하는 바이다.

1. 리더쉽의 문제로서 IAEA 이사회에 이미 참가하고 있는 혼신적인 전문가대표를 더욱 보강하여 최고위급의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쉽을 부여하여야 한다.

첫째, 이를 위하여 백악관은 IAEA가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핵비확산과 국가안전보장 간의 상호관계를 재평가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둘째, 의회는 연방정부의 계획과 활동을 감시

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부, 특히 소련의 의회 당사자들과 접촉창구가 유지되도록 하는 핵비확산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IAEA의 보장조치 및 IAEA기관 자체가 국가안전보장과 국제정세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현재 동결되고 있는 IAEA의 예산을 인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미국정부는 소련과 함께 IAEA가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군축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IAEA의 역할을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군축감시역할에 IAEA가 개입함으로써 어떻게 핵비확산문제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IAEA가 핵설비의 폐쇄의 경우나 퇴역 핵탄두물질의 저장과 전용의 경우 이것이 전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4. 미국은 소련 및 IAEA의 선진원자력회원국과 더불어 IAEA가 가맹국가들의 다양한 목적, 이해관계 및 기술수준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안정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미국은 강대국들이 핵비확산의 위기에 대하여 조정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협약 또는 기구를 수립할 수 있는 타당성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론에 따라 미국은 소련과 협의하여 핵확산위기관리를 각기 또는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공동협약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미국은 소련 또는 기타 핵기술 및 핵물질 공급가능 국가와 더불어 국제보장조치를 위하여 잠재된 문제들을 취급할 수 있는 방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서 취급할 최우선 과제는 국제감시원칙의 수립인데, 그 원칙은 NPT 서명국이나 비서명국을 망라해서 적용될 수 있고, 또한 핵추진함을 위해서 생산된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비파괴적 군사적 목적을 위한 핵분열성물질의 생산 및 용도가 핵무기 생산으로 전용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